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6353
결재일자	2015.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88호

★ 주 무 관	주차기획팀장	교통지도과장	안전건설교통국	부 구 청 장
권재순	곽동윤	박명자	이학구	08/10 정연찬
협 조	규제개혁팀장		강성문	
	주무관		代김미선	
	주무관		안은진	

『모두가 만족하는 주차장 만들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 추진근거
 -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 시행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추진계획(구청장 방침)
- 개정사유
 - 상위법령 근거 없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장치 설치내용 삭제 등
 - 빈 시간대의 주차공간을 여러사람이 공유하여 주차난 해소
- 주요 개정내용

개정조항	개정 내용
제7조 삭제 제8조 수정	<u>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u> 삭제 제7조 관련조항 수정(7호) 및 삭제(6호)
제12조2 추가 별표 1	<u>공유주차 구획</u> 운영 및 이용요금 내용 추가

안전건설교통국
교 통 지 도 과

『모두가 만족하는 주차장 만들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계획(안)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로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자동차의 운행제한 장치 설치 조항 등을 삭제하여 이용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주차공간공유 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주차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I 개정근거 및 사유

■ 개정근거

-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 시행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추진계획(구청장방침, 2015.6.17)

■ 개정사유

<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동차에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유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상위법령에도 근거가 없어 법제처에서 규제개선과제로 요청한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

-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부정주차 감소를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을 배정받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차공유시간을 설정하면, 주차공간이 필요한 주민이 주차구획을 사용하는 공유사업의 근거 마련

자동차 운행제한장치 설치 관련조항 삭제 및 수정 - 관련조항 <붙임 1>

제7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 - 전부 삭제

공영주차장 요금체납차량 운행제한장치 설치 조항

-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해당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유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상위법령에도 근거가 없어 법제처에서 규제개선과제로 전파한 항목임.

제8조(주차거부 금지) 제6호 삭제, 제7호 수정

주차거부금지 제외

관련조항	기존	변경
6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 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삭제
7호	제5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또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2항 및 제161조제3호에 따른 주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6호 : 인용된 조항(제12조제2항) 해당사항 없음

- 7호

- 인용된 조항(제5조제1항) 해당사항 없음
- 과태료 부과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147조제2항 및 제161조 제3호는 내용이 광범위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를 인용하고자 함.(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제88조 인용)

< 관련조항(도로교통법 147조, 제160조, 제161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붙임 2 >

공유 주차구획 운영내용 추가

- (안)제12조2(공유주차구획 운영)
 -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여러사람이 공유하는 주차장 공유 사업내용
 - 공유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공유주차공간 제공자에게 지원
- (안)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 공유주차구획 주차요금은 기본 30분당 600원, 추가 10분마다 200원으로 함
 - * 소액결제 기본 600원

III 자치법규 타 자치구 개정 현황

자치구	공유주차구획운영			운행제한장치 삭제 (규제개선 과제)
	계	조례개정	추진중	
계	7	3	4	4
개정구청		강동,광진, 송파	영등포,서대문, 금천,성북	금천,성북, 강북,성동

IV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 2015. 8월(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및 구의회 의안 제출 : 2015. 9월
- 공포시행 : 2015. 10월

V 행정사항

-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안내
- 시설관리공단 전산DB 연계 등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 붙임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등.
 2.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60조, 제161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